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1

심의일자	2018.11.13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서초구 반포2동 12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8-22-6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의결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			
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			
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경관법」 제28조 및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경관·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			
〈 건축 분야 〉			
□ 건축계획			
○ 도시경관상 위압감을 고려하여 최상부 주민공동시설(스카이커뮤니티)의 규모를 축소 또는 삭제하는 등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하고, 105동과 106동에 상부에 연결된 장식물은 삭제 바람.			
○ 남측 40m도로변 사이에 계획된 방음벽은 보행동선 등 열린 계획을 위해 삭제 바람.			
○ 입면계획이 변경된 발코니 설치계획 전·후 비교하여 정확히 제시 바람.			
○ 일부 주동의 커튼월록 설치로 발코니 확장시 소음 및 열 손실이 우려되므로 면밀히 검토 바람.(난반사(빛공해) 등도 고려하여 검토)			
○ 필로티 하부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활용 계획 검토 바람.			
○ 태양광 판넬은 음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조정 바람.			
○ 개별 승강기의 설치로 공용코아 전용화를 방지하도록 계획 바람.			
○ 전용설비 면적이 지나치게 넓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적정 규모로 계획 바람.			
□ 조경			
○ 인공지반 상부 교목식재는 부분은 토심 1.5m이상으로 계획 바람.			
□ 교통			
○ 서초구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행 바람. 끝.			

2018.11.13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